

『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2월 2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3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3월 10일

제2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박 세 범

나. 제안이유

-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·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, 유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없이 ‘주민등록번호’를 수집·이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의 별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」 등 14개 조례 중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하는 별지 서식 22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·수집하거나 삭제처리

- 「구미시 상징물 조례」의 별지 서식 1건에 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 항목 삭제
-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별지 서식 1건에 개인정보수집 필수 고지 항목 추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투자통상과, 교통행정과, 기획예산담당관, 홍보담당관, 안전재난과, 주민복지과, 청소행정과, 농정과 및 하수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- 본 『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2016. 3. 29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하고 있는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14개 조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,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,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속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